P - 146 - 2015

#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

2015. 11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국교통대학교 백종배
- 제·개정 경과
- 2015년 11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OSHA, 29 CFR 1910. 38, "Principal Emergency Response and Preparedness Requirements and Guidance", 2004
- KOSHA GUIDE P-101-2012, "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"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5년 12월 7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소규모 화학공장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

# 1. 목 적

이 지침은 중소규모 화학공장의 공정이상 또는 화재, 폭발, 독성물질 누출 등에 의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,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 중에서 소규모 화학공장의 사업주가 비상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비상사대"라 함은 공정이상 또는 화재, 폭발, 독성물질 누출 등에 의하여 인명 및 재산 손실, 심각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, 조업상의 비상사태와 자연재해로 구분한다.
  - (나) "조업상의 비상사태"라 함은 화재, 폭발, 독성물질 누출, 환경오염 사고 및 인근지역의 비상사태 영향이 사업장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.
  - (다) "자연재해"라 함은 태풍, 폭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

### 4. 비상사태 파악 및 분석

사업주는 보유설비와 취급하고 있는 위험물질에 의한 발생 가능한 비상사태를 KOSHA GUIDE P-101-2012, "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"에서 정한 각각의 의무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 5. 비상조치계획의 수립

- (1)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.
  - (가) 근로자의 인명보호에 최우선 목표를 둔다.
  - (나) 가능한 비상사태를 모두 포함시킨다.
  - (다) 비상통제 조직의 업무분장과 임무를 분명하게 한다.
  - (라) 주요 위험설비에 대하여는 내부 비상조치계획 뿐만 아니라 외부 비상조치 계획도 포함시킨다.
  - (마) 비상조치계획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작성되어 모든 근로자가 동의하고,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.
  - (바) 비상조치계획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모든 근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.
- (2) 비상조치계획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가)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절차(<별표 1> 참조)
  - (나)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
  - (다) 대피 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
  - (라) 대피 후 모든 직원에게 비상사태에 대한 설명 절차
  - (마) 구조 또는 의료 업무를 맡은 직원이 따라야 하는 절차
  - (바)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직원의 이름과 직책
  - (사) 사고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정보
- (3) 직원 경보시스템
  - (가) 직원 경보시스템은 각각의 목적을 위해 특정의 신호를 사용해야 하며, 사업주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.
  - (나) 경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P - 146 - 2015

- ① 경계경보
- ② 가스누출경보
- ③ 대피경보
- ④ 화재경보
- ⑤ 해제경보

# 6. 비상조치계획의 검토

- (1)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조치계획을 해당 직원과 검토하여야 한다.
  - (가) 처음 비상조치계획 수립 시
  - (나) 직원이 해당 작업에 처음 배정된 경우
  - (다) 각 비상조치요원의 임무가 변경된 경우
  - (라) 비상조치계획 자체가 변경된 경우
- (2) 비상조치계획의 수립과 검토 시에는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비상사태의 종류 및 비상사태의 전개에 따라 신속한 결정과 조치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#### 7. 비상대피 계획

- (1) 비상대피 계획의 목적은 비상사태의 통제와 억제에 있으며, 비상사태의 발생은 물론 비상사태의 확대 전파를 저지하고,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.
- (2) 재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적절하고, 신속한 비상대피 계획의 확립을 위해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.
  - (가) 경보 발령절차
  - (나) 비상통로 및 비상구의 명확한 표시
  - (다) 근로자 등의 대피절차 및 대피장소 결정

P - 146 - 2015

- (라) 대피장소별 담당자 지정과 그들의 임무 및 책임사항
- (마) 비상통제센터의 위치 및 비상통제센터와의 보고체계 확립
- (바) 임직원 명부 및 하도급업체 방문자 명단의 확보와 대피자의 확인체계 확립
- (사) 대피장소에서 근로자 및 일반대중의 행동요령
- (아) 임직원 비상연락망의 확보
- (자) 외부 비상조치기관과의 연락수단 및 통신망 확보

### 8.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

- (1)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
  - (가) 비상통제 조직의 임무는 최소한의 필수 요원을 활용하여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으며, 주 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  - ① 사고의 수습
    - ② 인접지역으로 확산 방지와 제한
    - ③ 명령 전달체계 확립과 간단명료한 기본적 책임의 명시
  - (나) 비상통제 조직표 및 업무분장은 (<별표 2>) 및 (<별표 3>)과 같다.
- (2) 비상지휘담당

정상 근무시간 내에서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장이 비상지휘자가 되며, 휴무일 또는 일과시간 이후에는 각 교대 근무자 중 선임자가 부서장 도착 시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.

- (가) 비상통제 인원의 신속한 소집과 지휘
- (나) 재난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동원과 운영
- (다) 설비의 비상운전정지와 위험물질의 제거 등 운전 통제에 관한 사항
- (라) 누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
- (마) 비상사태의 진행예측 및 영향파악과 대피여부에 대한 결정 및 실행

P - 146 - 2015

- (바) 인접지역의 피해예측과 대피명령
- (사) 사상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
- (아) 모든 비상재난관리 인원점검과 교육훈련 상태의 확인

#### (3) 연락담당

연락담당은 발생부서 부서장에게 비상상황을 보고하고, 비상통제조직 소집과 인원 파악을 담당하며, 비상지휘자를 보좌하고, 지시에 따른다.

- (가) 휴무일, 일과이후: 각 교대 근무조 중 운전업무 근무자
- (나) 정상 근무 시 : 비상사태 발생부서워이나 사무실 직원 중 지정된 직원
- (4) 인명구조 및 의료담당

상해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여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.

- (가) 휴무일, 일과이후: 응급처리 훈련과정을 이수하고, 응급 처치요원으로 지정된 직원
- (나) 정상근무 시 : 안전보건관리자업무 관계자

#### (5) 경비담당

경비담당은 비상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소방서, 인근공장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, 방문 객의 명단을 파악 보고하고, 신속히 대피토록 하며, 외부로부터의 불필요한 출입통제 와 구내 교통정리를 담당한다.

#### (6) 대응담당

대응담당은 사고발생지역의 생산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자가 되어 비상지휘자의 지시를 받아 비상사태 발생공정과 관련된 비상정지조치 및 비상발전기, 소방펌프의 가동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, 지원인원이 도착 시까지 비상대응을 담당한다.

#### (7) 비상통제담당

안전보건책임자가 안전관리관계자를 비상통제담당으로 지명하되,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토록 하다.

- (가)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지휘자와 연락을 취하여 요청사항을 조치한다.
- (나) 비상통제를 위한 공간을 구성하고 조치명령과 협조요청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.

P - 146 - 2015

- (다) 언론계, 의료계, 정부기관 및 직원 가족 등에게 발표, 보고,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- (라) 비상사대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 및 고용노동부 지청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할지사 등에 지원을 요청한다.
- (마) 전화, FAX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송수신토록 한다.

# 9. 비상통제센터(장소) 설치

- (1) 비상사태 시 효과적으로 지휘 및 통제할 수 있는 센터는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.
- (2) 비상통제센터에는 비상통제 일지를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.
  - (가) 적절한 수의 통신설비
  - (나) 개인보호구 및 기타 구조장비
  - (다) 풍속 및 풍향계
  - (라) 근로자, 도급자 및 방문자의 명단
  - (마) 비상조치 기관의 명부
  - (바) 시설물 관련 도면 및 자료
    - ① 위험물질의 시설별, 지역별 취급 및 저장수량
    - ② 위험물질의 안전자료
    - ③ 안전 및 소방시설 장비현황
    - ④ 소방용수 저장설비 및 공급계획
    - ⑤ 공장 배치 및 설비 위치도
    - ⑥ 사업장의 출입문 및 도로망 위치
    - ⑦ 주변지역 주요시설물의 위치
    - ⑧ 하수 및 배수시설
- (3) 비상통제센터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 10. 비상 훈련의 실시 및 조정

비상조치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하고, 확인하여야 한다.

- (1) 계획에 따른 사람들의 역할
- (2) 계획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테스트 되는지의 여부
- (3) 계획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최신화 되는지의 여부
- (4) 환경변화에 대해 계획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검토되고 수정되는지의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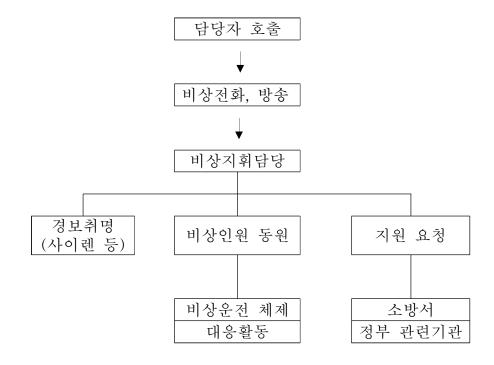
#### 11. 주민 홍보계획

사업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근 거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(1) 대주민 홍보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여야 한다.
  - (가) 유해·위험설비의 종류
  - (나) 사용하고 있는 유해·위험물질 및 그 관리대책
  - (다) 비상사태 발생 경보체계 등 인지방법
  - (라)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행동요령
  - (마) 중대사고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
  - (바) 중대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방법
- (2) 비상사태 중에 다음 사항을 홍보에 포함시켜야 한다.
  - (가)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주요 위험시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작업자들에게 가능한 신속하게 중대사고 발생을 알리는 등의 정보 제공
  - (나) 비상사태 발생기간 중에 각종 최근 정보를 홍보하여야 하며, 특히 과거에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주민행동 요령이 필요할 때에는 언론기관과 협조
- (3) 중대사고 이후에 사고조사 결과 및 주민과 환경에 미칠 장·단기적 영향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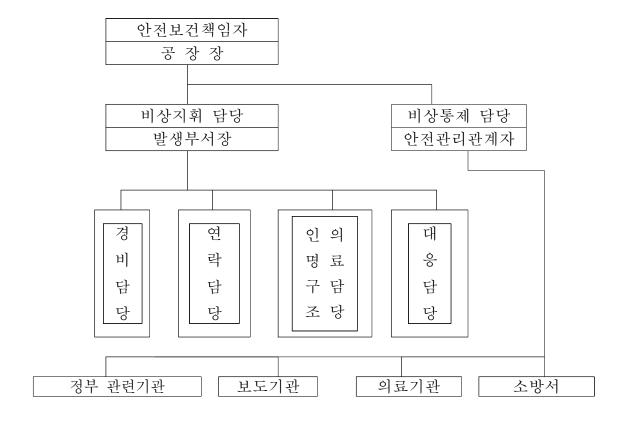
### <별표 1>

# 비상신고 계통도 (예시)



### <별표 2>

# 비상통제 조직표(예시)



<별표 3>

# 비상통제 담당별 업무분장(예시)

통제조직	업무분장 내용	비고
안전보건책임자 (공장장)	- 전 공장 비상체제로의 전환 - 비상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결정 - 보도통제와 공식적 보도	
<b>비상지휘담당</b> 주 : 발생부서장 야 : 교대선임자	<ul> <li>비상통제 인원의 동원과 지휘</li> <li>비상통제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 증원</li> <li>비상사태의 영향파악과 대피상황 결정</li> <li>사고 속보의 작성과 보고</li> <li>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실행</li> <li>비상동원체제의 훈련</li> </ul>	
비상통제담당 안전관리관계자	- 안전보건책임(공장장)로부터 지시된 사항의 실행 - 통제공간의 확보, 설치 - 소방지원요청 등 관련기관의 보고 - 사고원인 조사 및 언론통제 - 비상동원 계획의 수립과 교육	
<b>대응담당</b> 발생부서원	- 재난 발생 공정의 비상운전정지 - 비상발전기 및 소방펌프의 가동 - 화재진화 활동 및 발생방지	
인명구조 및 의료담당 조직임명자	- 인명구조 및 부상자 확인 - 응급치료 및 후송	
<b>연락담당</b> 사무실 근무자	- 비상지휘담당을 보좌하고, 지시에 따름 - 경보 취명, 비상방송 - 비상상황의 파악과 보고 - 비상연락망의 가동 - 비상통제인원의 동원 - 비상통제담당의 업무대행과 지시된 사항	
<b>경비담당</b> 경비실	<ul><li>방문객 명단 파악과 보고</li><li>비상지휘담당의 지시에 따라 대피안내</li><li>불필요한 인원의 진입통제와 소방지원단의 안내</li></ul>	